

제목 : <99.4> 농협의 “사내부부” 우선퇴직 강요 관련자료

농협의 “사내부부” 우선퇴직강요 관련자료

국회의원 李美卿(한나라당, 전국구)

1. 농협의 성차별적 “사내부부” 우선퇴직사건 관련 경과

○. 99. 1. 명예퇴직 실시

“사내부부”중 남성(남편)에 “명예퇴직 요청”, 실제로는 각 지점 등을 중심으로 “사내부부”중 여성(부인)들에게 ‘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인이 퇴직해야 한다’고 종용. ⇒ 총 762쌍의 “사내부부” 중 752쌍 희망퇴직(여성688명, 남성64명)

나머지 10쌍 중 1인씩은 “순환명령휴직”

○. 이미경의원 : 3월 17일 “환경노동위원회 회의”에서 “농협”의 “사내부부”중심 구조조정의 성차별 여부에 대한 질의

-질의 요지

: '98년도 기준으로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“인력조정”중심의 구조조정을 택한 문제 지적

: ‘상대적 생활안정자’에 “사내부부”를 선정하고, “사내부부” 중 여성들에게 전화·면담 등을 통해 ‘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’는 남편을 불모로 한 사실상의 강압(협박)을 통한 여성퇴직 종용의 성차별성(간접차별)

: 희망퇴직 여성의 66%이상을 “1년 계약직으로 재채용”한 것은 여성인력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, 생산성 저하를 낳는 잘못된 구조조정이며, 성차별이다.

⇒ 사실 조사 및 위법에 대한 검찰 고발 요구, 노동부장관 “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아냄.

○. 3/22~25 : 노동부 “특별근로감독”실시

○. 3/24 : 이미경의원, “농협”의 “사내부부”중심 성차별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“법률 의견서” 노동부에 제출

2. “농협”을 중심으로 한 여성우선해고의 문제 및 해결방향

○. “농협”의 “사내부부”우선해고는 구조조정과정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임.

○. 성차별적 “여성중심”구조조정은 경력있는 “여성”의 사회참여와 능력향상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전문화, 사회 지도력으로서의 성장을 차단. 사회적인 손실 심각.

○. 결국 힘보다는 섬세함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“정보화”의 21세기 국가적경쟁력을 약화시킴.

따라서 노동부는 “농협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제2금융권,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에서 “여성”이 우선해고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조치를 단행해야 함.